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9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식산업과장 정진환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시 첨단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 
나. 주요골자

-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(안 제3조)
-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설물 설치(안 제4조)
-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협동화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대학, 연구기관, 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(안 제6조제1항)
-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-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권고, 심의, 건의를 위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음(안 제8조제1항)
-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·대학교수·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임직원·기업인·관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(안 제8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면 보수, 장비, 연구소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?</li> <li>○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?</li> <li>○ 몇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지?</li> <li>○ 지식기반산업의 중점적 육성분야는?</li> <li>○ 입주현황을 보면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은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소 신설이 아니며 아파트형공장 3개 사업이 3층씩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며 3개 층 중 일부를 연구소로 만들 계획이며 장비 등은 산자부와 지원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.</li> <li>○ 같이 입주한 업체에 대한 융자입니다.</li> <li>○ 정밀기기 13개, 센서 10개, 계측기 12개 업체 총 35개 업체입니다.</li> <li>○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지만, 3동은 기술집적화단지가 되고 2차 단지는 전자 부품연구원이 이전을 제안하고 있으며, 바이오업체 집합체가 부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.</li> <li>○ 산업자원부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사전 계획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</li> </ul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 첨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일부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그 후 막대한 시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만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것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#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”을 삭제한다.

안 제8조 중 제명과 제1항 중 “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”를 “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10인 이내”를 “11인 이내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업무담당국장”을 “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61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9. 1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불필요한 수식어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” 삭제

○ 협의회 명칭이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.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 “협의회”를 위원회로 조정

○ 위원회 의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10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

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함

-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
2. 주요골자

-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” 조항을 삭제(안 제6조제2항)
- “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”를 “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”로 수정(안 제8조, 제8조제1항)
- 위원회 위원수를 “10인” 이내에서 “11인” 이내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“업무담당국장”을 “위원 중에서 호선”으로 수정(안 제8조제2항)
- “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 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)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공동센터의 운영) ①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현행과 같음) ①(생략)</p> <p>②.....(삭제).....</p>
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)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권고, 심의, 건의 등을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여 위원은 시의원, 대학교수,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임직원, 기업인, 관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) ①.....</p> <p>.....위원회.....</p> <p>.....</p> <p>②.....11인 이내.....</p> <p>.....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.....</p>
<p>③(신설)</p>	<p>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지식기반산업”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 그리고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상산업과 그와 연관된 만화·캐릭터·팬시 등을 포함한다.

제3조(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) 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및 설치
2. 산·학·연·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
3. 지식기반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행사의 기획·홍보·실행에 관한 사업
4.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
5. 각종 자료의 수집, DB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
6.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시설물의 설치)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지식기반산업 관련 연구기관
2. 지식기반산업 관련 전시실
3.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실
4. 지식기반산업 공용기기실
5. 지식기반산업 정보실
6. 기타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(이하 “시 공유재산”이라 한다)을 지식기반산업관련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(공동연구센터의 운영)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협동화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대학·연구기관·단체(이하 “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자금의 용자) 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.

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)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권고, 심의, 건의 등을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제1항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원·대학교수·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임직원·기업인·관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·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·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